

직제규정^[목차로]

제정	2009. 05. 27.
개정	2009. 12. 18.
개정	2011. 01. 06.
개정	2012. 01. 05.
개정	2012. 05. 03.
개정	2013. 02. 07.
개정	2013. 11. 18.
개정	2013. 12. 31.
개정	2014. 02. 27.
개정	2015. 02. 26.
개정	2015. 12. 21.
개정	2016. 12. 29.
개정	2017. 02. 27.
개정	2018. 01. 31.
개정	2018. 04. 18.
개정	2018. 12. 28.
개정	2019. 08. 06.
개정	2019. 09. 09.
개정	2019. 12. 30.
개정	2020. 03. 10.
개정	2020. 12. 24.
개정	2021. 06. 09.
개정	2021. 12. 29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원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진흥원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원장 직속의 부설기구와 상임감사 직속의 감사실을 두며, 부원장 및 부설기구의 산하에 조직을 편제한다. <개정 2012.5.3.> <개정 2013.11.18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 <개정 2016.12.29.> <개정 2017.2.27.> <개정 2018.1.31.> <개정 2018.4.18.> <개정 2019.8.6.> <개정 2019.9.9.> <개정 2020.12.24.> <개정 2021.6.9.> <개정 2021.12.29>

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 전체 조직의 편제는 1기구(센터), 7본부, 1실이며, 전략혁신본부, 경영지원본부, 정책본부, 게임본부, 방송영상본부, 대중문화본부, 기업·인재양성본부를 본부로 둔다. <개정 2011.1.6.> <개정 2012.5.3.> <개정 2013.11.18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 <개정 2016.12.29.> <개정 2018.1.31.> <개정 2018.12.28.> <개정 2019.8.6.> <개정 2019.9.9.> <개정 2020.3.10.> <개정 2021.6.9.> <개정 2021.12.29>

③ 원장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, 팀, 단을 둘 수 있으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29>

④ 진흥원은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, 부설기관 혹은 지부 등을 둘 수 있다.

⑤ 정관 제4조 4호 및 본 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부설기구로 두며, 부설기구의 장이 관장한다. <신설 2020.12.24.> <개정 2021.6.9.> <개정 2021.12.29>

⑥ 해외사무소, 부설기관 혹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5.12.21.> <조항이동/개정 2020.12.24.>

제4조(기구 및 정원) ① 진흥원의 기구 및 직원의 정원은 <별표 1> 및 <별표 2>와 같다. <개정 2013.11.18.> <개정 2015.2.26.>

② 부서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.

③ 기구 및 정원의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개정 2012.5.3.>

제 2 장 보 직 등

제5조(부원장) 부원장의 직무는 상임이사가 담당하며, 원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지휘한다.

제6조(본부장) ① 본부에는 본부장을 두며, 본부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1.1.6.> <개정 2014.2.27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 <개정 2021.6.9.> <개정 2021.12.29.>
② <조항 삭제 2011.1.6.>

제7조(감사실) ① 상임감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실장을 둔다. <개정 2014.2.27.> <개정 2018.4.18.> <개정 2019.9.9.> <개정 2021.6.9.>
② <삭제 2019.9.9.>

제8조(보임) ① 부서장이라 함은 팀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.
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21.6.9.>

- ② 제1항의 각 부서장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소관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9조(권한의 위임) ① 원장은 진흥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직무대행) ① 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1.1.6.> <개정 2012.5.3.> <개정 2019.9.9.>
② 부원장 및 부서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직제 순에 따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세부적인 내용은 ‘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’에 따른다. <개정 2012.5.3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9.9.9.>

제 3 장 업무 분장 등

제11조(업무분장)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정원의 근로자) ①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에 계약제 근로자 등을 고용할 수 있다.

제13조(보칙)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3.11.1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5.02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5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5.12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6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(단, <별표 1> 기구표는 2017년 정기인사 발령일 이후부터 시행하고,
<별표 2> 정원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)

부 칙<개정 2017.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8.1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8.4.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8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 (단, <별표 1> 기구표는 2019년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하고, <별표 2> 정원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)

부 칙<개정 2019.8.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9.9.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9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20.3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0년 3월 10일
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20.12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1년 1월 1일
부터 시행한다. (단, 부설기관 관련 조항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
시행일인 2021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)

부 칙<개정 2021.6.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 및 내규와의 관계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진흥원 규정 및
내규에서의 부서명 및 직명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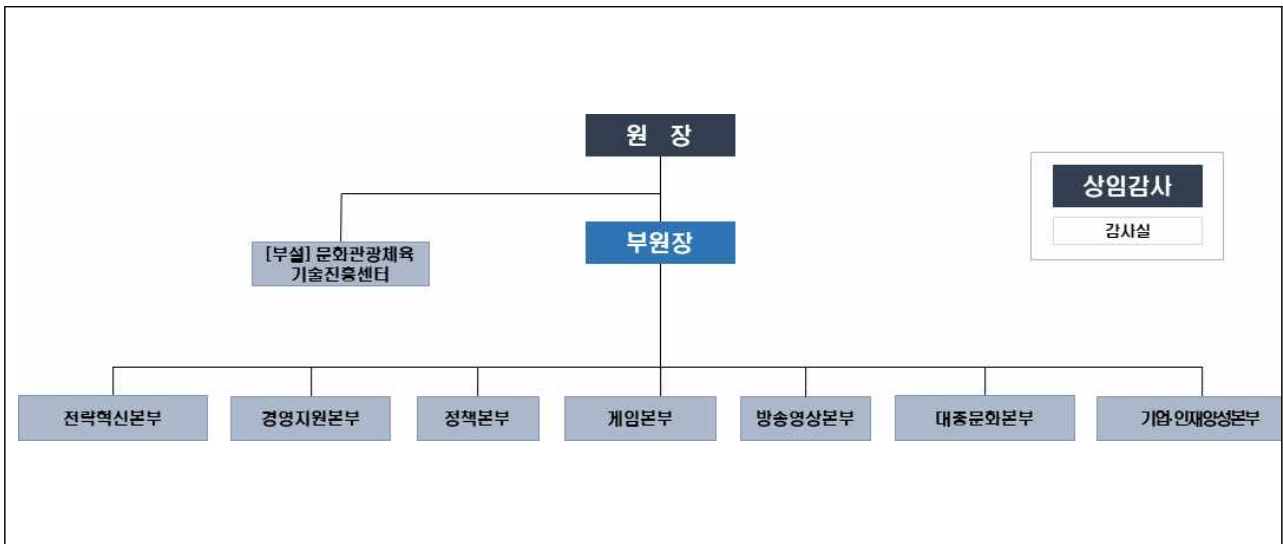
부 칙<개정 2021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022년 1월
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 및 내규와의 관계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진흥원 규정
및 내규에서의 부서명 및 직명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〈별표 1〉 기구표 <개정 2013.11.18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 <개정 2016.12.29.> <개정 2017.2.27.> <개정 2018.1.31.> <개정 2018.4.18.> <개정 2018.12.28.> <개정 2019.8.6.> <개정 2019.9.9.> <개정 2020.3.10.> <개정 2020.12.24.> <개정 2021.6.9.> <개정 2021.12.29>

7본부, 1실 / 1 부설기구(센터)



<별표 2> 정원표 <개정 2013.2.7.> <개정 2013.12.31.> <개정 2015.2.26.> <개정 2015.12.21.> <개정 2016.12.29.> <개정 2018.12.28.> <개정 2019.9.9.> <개정 2019.12.30.> <개정 2020.12.24.> <개정 2021.6.9.> <개정 2021.12.29>

정 원 표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임원	직원
총계	528	3	525
계	267	3	264
원장	1	1	-
상임감사	1	1	-
상임이사	1	1	-
B.U.M.*(실(본부)장급)	6	-	6
G1**(부장급)	18	-	18
G2(차장급)	48	-	48
G3(과장급)	75	-	75
G4a(대리급) G4b(주임급)	117	-	117
무기계약직	261	-	261

* Business Unit Manager

** Grade 1